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(김성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7114

발의연월일 : 2026. 2. 26.

발 의 자 : 김성회・김영환・이개호
이인영・김남근・김영진
조승래・강훈식・신정훈
윤후덕・이용우・최혁진
윤준병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후보자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, 대통령선거・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에 한정하여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및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음.

그런데 지방분권화가 강화되면서 지역구시・도의원선거의 중요성이 높아졌으나 시각장애선거인에 대하여 지역구시・도의원선거의 후보자의 정보가 그다지 잘 제공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, 점자형 선거공보의 의무적 작성・제출 대상에 지역구시・도의원선거의 후보자도 포함시키려는 것임(안 제65조제4항 단서).

법률 제 호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5조제4항 단서 중 “대통령선거·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”를 “대통령선거·지역구국회의원선거·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및 지역구시·도의원선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5조(선거공보) ① ~ ③ (생략)	제65조(선거공보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후보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공보 외에 시각장애선거인(선거인으로서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위한 선거공보(이하 “점자형 선거공보”라 한다) 1종을 제2항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의 두 배 이내에서 작성할 수 있다. 다만, 대통령선거·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·제출하여야 하되,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·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.	④ ----------. ---대통령선거·지역구국회의원선거·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및 지역구시·도의원선거----------
⑤ ~ ⑭ (생 략)	⑤ ~ ⑭ (현행과 같음)